

#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11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1. 29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12. 9

(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문화관광과장 최성기

나. 제안사유

-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관련사항을 제정 화순군지편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위원회 구성(안 제2조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화순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됨.

○ 위원회 기능(안 제3조)

- 군지 편찬지침 및 운영방안,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, 원고 심사, 수록사항 결정 등

○ 상임위원(안 제5, 6조)

- 위원 중에서 1명을 두고 군수가 위촉하며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됨.

○ 실비보상(안 제11조)

-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5급 5호봉, 보조원은 7급 5호봉 상당액의 월급과 동직급에 맞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.

○ 위원의 해촉(안 제12조)

-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-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의 사회·경제·역사·문화 등을 총정리한 화순군지 편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예산이 수반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.

4. 결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토론자 : 이선 의원

- 제11조 “제1항을 삭제”하고, “제2항”을 “제11조”로 하며 “비상임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수정

6. 심사결과

“수정가결”

7. 붙임 :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

1/20

##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. 12. 9

제안자 : 이선 의원

### 1. 수정이유

- 상임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정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제11조 “제1항을 삭제”하고, “제2항”을 “제11조”로 하며, “비상임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함.

##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11조 “제1항을 삭제”하고, “제2항”을 “제11조”로 하며, “비상임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수정안
<p>제11조(실비변상) ①상임위원에게는 지방 공무원 5급 5호봉, 소속직원이 아닌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7급 5호봉 상당액의 월급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소속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실비변상) ①(삭제)</p> <p>제11조(실비변상)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
##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화순군지편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화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

③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
2.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
3. 군지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
4.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

**제4조(위원장등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상임위원)** ①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.

②상임위원은 군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**제6조(상임위원의 직무)**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군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.

**제7조(보조원)**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.

②보조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고 군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간사와 서기)**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

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, 서기는 군지편찬 업무담당자가 된다.

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서기와 함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

**제10조 (회의록)**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

**제11조(실비변상)**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기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원의 해촉)** 위원회의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.

**제13조 (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